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12월 7일(일) 11:40	보스코홀
M.E	12월 7일(일) 11:50	6교실
우리어머니 Cu.	12월 14일(일) 11:40	교육관
사도들의 모후 Cu.	12월 14일(일) 11:40	식당
사목회의	12월 16일(화) 19:40	식당

알림

- 12월 병자영성체는 12월 12일(금) 구역별로 있습니다.
- 12월 14일(일)은 자선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2월 17일(수) 11시 교육관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12월 20일(토)은 성탄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12/14) 청소 담당 : 13구역

구역장,반장 송년미사 안내

- 12월 10일(수) 저녁7시미사
- 미사후 구역장,반장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판공성사 안내

- 대림시기 미사전후로 판공성사 있습니다.
- 집중판공성사 : 12월 18일 (목) 19:40

본당 환경개선기금마련 모금안내

- 본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모금을 받습니다.
- 모금을 하신 분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겨울모자, 악세사리, 신발, 인형, 오르골 등)
- 일시 : 12월 14일(일) 교중미사 후

성탄제 안내

- 일시 : 12월 24일(수) 저녁8시 미사후
- 성가경연대회로 진행
- 성가지정곡 1개, 자유곡 1개
-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점부과

대림특강일정

- 일시 : 월요일 저녁미사 후

일자	제목	강사
12월 08일	2026 교구 사목교서 및 본당 사목설정방향 설명	주임신부님
12월 15일	거룩한 기억속에 현존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정은신부님
12월 22일	마르첼리노의 기적	영화상영

성탄 대축일 미사안내

24일(수)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25일(목)	성탄 대축일	10:30, 15:00, 18:00 (06:30 미사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성(11월 26일 ~ 12월 2일)

- 교무금 10,328,000원
- 주일헌금 현금 4,821,000원
신자애퍼 17,000원
- 2차헌금 1,962,000원
- 정영자 1만원 오성환20만원 황정후 5만원
이길자10만원 이판임 5만원 강혁순 6만원
손상순 5만원 채수풍30만원 최순애10만원
권정자10만원 이은용 5만원 오현석50만원
오훈석5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7	박혜선	도현만	심재순 김덕영 손정주
12/14	황원선	김영균	노순규 안상록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7	조홍환	장인홍	박용환 도현만
12/14	최승일	조홍환	이운영 박승환

성가번호 ♪ 입당 : 91 ♪ 예물준비 : 216, 217 ♪ 영성체 : 155, 156 ♪ 파견 : 92



주님 이시대에 - 정의와평화가 - 꽃피게하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2 장 성 사

제 7 절 혼인성사

제 8 관 혼인의 유효화

제 122 조 (단순 유효화)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교회법상 형식대로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새로 함으로써 그 혼인이 유효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소멸되었거나 관면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156조 참조).
2.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거나 동거하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경우에는 부부가 교회법상 형식대로 혼인합의를 새로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59.1160조 참조).
3. 혼인합의가 없음이 분명하면 혼인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교회법 제1159조 3항 참조).

제 123 조 (근본 유효화)

부부가 혼인합의를 표명하였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원인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근본 유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근본 유효화를 신청한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4조 참조).

1. 혼인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교회법 제1161조 참조).
2.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혼인 예식을 주례하였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교회법 제1108조 참조).
3.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4.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무효인 혼인.

제 3 장 그 밖의 경배

제 1 절 준성사

제 124 조 (성물 축복)

사제는 어느 성물에 대하여서든지(십자가, 묵주, 성상 등) 어느 경우라도 가장 짧은 약식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 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축복 예식서, 1182.1207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6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132-134항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